

#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2190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. 7. 20.

제출자 : 정 부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, 앞으로는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바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##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4호 중 “취소”를 “취소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0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. 다만,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30조(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취소 (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)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